

「구미시 농촌진흥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: 김영길 의원 외 18명

2. 제안이유

-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농촌진흥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등 위임사항을 구체화하고, 그 외에 정책적 수요를 반영한 농촌진흥사업 실시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조례의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~제2조)
- 시장 및 농업인관련단체 등의 책무(안 제3조)
- 농촌진흥사업 지원(안 제4조)
- 연구개발사업, 농촌지도사업, 교육훈련사업(안 제5조~제7조)
- 농촌진흥사업을 위한 학술용역 및 포상(안 제8조~제9조)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
 - 「농촌진흥법」 제2조, 제5조, 제15조, 제19조, 제26조
 - 「농촌진흥법 시행령」 제23조제4항
 -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」 제3조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

- 구미시의 지역 여건과 특성에 맞는 농촌진흥사업 수립과 시행의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된 제정조례안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안 제5조에서 제7조까지 지역특성에 맞는 연구개발사업·농촌지도사업·교육훈련사업의 추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진흥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으로 농촌지역의 진흥과 농산업의 발전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. 또한 농업인들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훈련사업의 실시를 위해 「농촌진흥법 시행령」 제23조제4항¹⁾에 따라 교육기관 및 관련 단체의 위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농업인에 대한 전문적·실용적인 교육훈련이 가능해질 것으로 판단됨.
- 본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기존 상위법인 「농촌진흥법」에 근거하였던 농촌진흥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으로 구미시의 농업 발전과 농촌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.

1) 제23조(권한 등의 위임·위탁 등) ④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36조제2항 전단에 따라 법 제19조에 따른 교육훈련사업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서 농촌진흥청장이 정하는 시설·인력 등에 관한 기준에 적합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1. 교육훈련 관련 기관

2.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농업인, 청소년과 관련된 단체